

1. 개정이유

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(안 제17조의2)

○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 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비대상(사전심사 완료, 국무조정실)
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”을 “건축물”로, “포함한다)에”를 “포함한다)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“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막이설비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(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·결정·인가·협의·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2(물막이설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<u>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</u>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(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)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(이하 “물막이설비”라 한다)를 설치해야 한다. <u>다만,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u>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(생략)	제17조의2(물막이설비) ① ----- ----- ----- <u>건축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)</u> <u>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거나</u>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“<u>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</u>” ② (현행과 같음)